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	2018. . .	
연월일	(제 회)	

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고령군수 (재무과장)
제출연월일	2018. . .

법무규제개혁담당 심사필

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18. . .

제출자 : 고령군수

1. 개정이유

재산세 중과대상지역 중 우리군에 해당되지 않은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지방세법(제111조제1항제2호나목)에서 재산세 중과대상지역을 읍,면지역에 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령군 군세 조례 제12조를 삭제

3. 조례개정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 법령 : 지방세법

나.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:

다. 예산관련사항 : 해당없음

라. 성별 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마. 규제영향 분석 결과 : 해당없음

바. 기타 관련사항 :

조례 제 호

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12조 본문을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12조(중과대상지역)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“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”이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.</u></p>	<p>제12조(중과대상지역) 삭제</p>